

대학원생 휴식 및 재충전 제도 운영지침

제정 2021.09.06

개정 2026.03.0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 ‘대학원생 휴식 및 재충전 제도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본교(일반/전문/특수 대학원)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 적용한다. 단, 전문연구요원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, 전문연구요원의 휴가는 「병역법」,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에 따르도록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생 ‘휴식 및 재충전’은 본 지침에 근거하여 ‘대학원생 휴식권 존중과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해 연구활동으로부터 쉬는 날’을 지칭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‘휴식 및 재충전 제도’는 연구활동에만 적용되며 교과목 수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제5조(제도운영)

1.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일정한 ‘휴식 및 재충전’ 일수를 부여할 수 있다.
2. 대학원생의 ‘휴식 및 재충전’은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학과 학과장의 사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개정: 2026.3.1.)
3. 연구책임자로부터 부여 받은 ‘휴식 및 재충전’ 일수는 입학 학기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후(차년도 개강일 하루 전날)에 소멸된다.
4.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9월 6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 단, 2021년 1학기 이전 입학자에게는 2021년 9월 6일부를 기준으로 ‘휴식 및 재충전’ 일수를 부여하도록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